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7361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김민수

피 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박시욱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9. I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10. J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2. 26.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2,103,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070/2,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80/2,150 지분에 관하여,¹⁾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F,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²⁾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103,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땅 K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부(父)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땅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제1토지'와 같이 특정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동래군 L리(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M동, 부산 금정구 M동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N 전 97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45. 7. 24. O으로부터 매수하여 1945. 9. 1. 망인의 일본식 씨명인 P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2019.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C,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2019.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F,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생성 경위

분할 전 토지는 1950. 7. 1. 부산 금정구 M동(이하 '부산 금정구 M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N 전 333평, Q 전 131평, R 전 95평, S 전 78평, T 전 33평, U 전 80평, V 전 223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중 위 N 전 333평은 1958. 9. 8. N 대 52평(172㎡, 제1토지), W 대 65평(215㎡, 제2토지), X 대 35평, Y 대 69평(228㎡, 제3토지), Z 대 20평(66㎡, 제4토지), AA 대 24평(79㎡, 제5토지), AB 대 21평(69㎡, 제6토지), AC 대 25평(83㎡), AD 대 11평(36㎡), AE 대 11평(36㎡)으로 각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 AC 대 25평(83㎡)은 1990. 6. 23. 위 AD 대 11평(36㎡) 및 위 AE 대 11평(36㎡)과 합병되어 AC 대 155㎡(제7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귀속재산처리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현황

1) 제1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제1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1959. 3. 20. AF에게 매각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G, AH를 거쳐 피고 B이 2015. 3. 17. 제1토지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2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제2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1958. 12. 22. AI에게 매각하여, 제2토지에 관하여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C가 1987. 5. 22. 제2토지 중 995/2,150 지분에 관하여는 AI로부터, 제2토지 중 1,075/2,150 지분에 관하여는 AJ로부터 각 1987.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에 관하여는 AK, AL를 거쳐 2016. 11. 25. 피고 D이

2016.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3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제3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1958. 2. 18. AM에게 매각하여, 제3토지에 관하여 A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N을 거쳐 피고 E이 2012. 10. 30. 제3토지에 관하여 2012.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제4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제4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1961. 9. 26. AO에게 매각하여, 제4토지에 관하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P, AQ, AR을 거쳐 피고 F과 피고 G가 2017. 11. 6. 제4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제5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제5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1959. 1. 24. AS에게 매각하여, 제5토지에 관하여 A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T, AU, AV 등을 거쳐 피고 H이 2017. 11. 29. 제5토지에 관하여 2017.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제6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제6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1959. 4. 30. AW에게 매각하여, 제6토지에 관하여 A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X 등을 거쳐 피고 I가 2005. 9. 13. 제6토지에 관하여 2005. 9.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제7토지

피고 대한민국은 AC 대 25평, AD 대 11평, AE 대 11평을 각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다음, AC 대 25평은 1960. 10. 24. AY에게, AD 대 11평은 1959. 3. 20. AZ에게, AE 대 11평은 1959. 3. 20. BA에게 각 매각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Y은 1962. 12. 29. AD 대 11평 및 AE 대 11평을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0. 6. 23. AC 대 25평, AD 대 11평, AE 대 11평이 합병되어 제7토지가 되었다. 피고 J는 2017. 8. 3. 제7토지에 관하여 2017. 8.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과 원고의 상속

망인은 2015. 2.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분할 전 토지 및 그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체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 2, 4호증, 을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 소유의 분할 전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이를 귀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므로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는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는 '대한민국정부는, 재조 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 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 본 협정 제1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 또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 권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 귀속재산의 임대차 및 불하에 의한 순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일 절의 수취계정 및 매매계약과 함께, 이를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취득권에관한건) 제 2조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 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이하 '일본인'이라 한다)가 직 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 행 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 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들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미군 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1945. 9. 25. 조선군정청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인 망인이 1945. 7. 24. O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생성된 이 사건 각 토지도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처리된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각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

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참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동안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참조).

나) 피고 B의 경우(제1토지 부분)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G가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3.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H가 1977. 8. 20. AG로부터 제1토지를 증여받아 1977. 8.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이 2015. 3. 16. AH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여 2015. 3.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G는 제1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3. 11. 22.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AG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제1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며, AG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한 이상 이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G는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63. 11. 22.부터 10년이 지난 1973. 11. 22. 제1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G로부터 제1토지를 증여받은 AH와 AH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한 피고 B도 각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제1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다) 피고 C, 피고 D의 경우(제2토지 부분)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K이 1987. 3. 20.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I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가 1987. 5. 22. 제2토지 중 2,070/2,150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I(995/2,150 지분) 및 AJ(1,075/2,150 지분)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L가 2016. 2. 22. AK으로부터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2016. 8.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D이 2016. 10. 8. AL로부터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을 매수하여 2016. 11.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K은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3. 20.부터, 피고 C는 제2토지 중 2,070/2,150 지분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5. 22.부터 각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AK과 피고 C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위 각 지분을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며, AK과 피고 C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수한 이상 이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K은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87. 3. 20.부터 10년이 지난 1997. 3. 20. 위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K으로부터 위 지분을 상속받은 AL와 AL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피고 D도 각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제2토지 중 80/2,150 지분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또한, 피고 C는 제2토지 중 2,070/2,1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87. 5. 22.부터 10년이 지난 1997. 5. 22. 위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제2토지 중 2,070/2,1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라) 피고 E의 경우(제3토지 부분)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3, 을마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N이 1966. 7. 19. 제3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M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6. 8.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E이 2012. 2. 24. AN으로부터 제3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2012. 10.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N은 제3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6. 8. 21.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AN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제3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며, AN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3토지를 매수한 이상 이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N은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66. 8. 21.부터 10년이 지난 1976. 8. 21. 제3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N으로부터 제3토지를 상속받은 피고 E도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마) 피고 F, 피고 G의 경우(제4토지 부분)

갑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4, 을바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Q가 1969. 4. 10. 제4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P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9. 4.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R이 2005. 11. 11. AQ로부터 제4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2005.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F와 피고 G가 2017. 10. 16. AR으로부터 제4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7. 11. 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Q는 제4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9. 4. 11.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AQ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제4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며, AQ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4토지를 매수한 이상 이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Q는 제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69. 4. 11.부터 10년이 지난 1979. 4. 11. 제4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Q로부터 제4토지를 상속받은 AR과 AR으로부터 제4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피고 F 및 피고 G도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 및 피고 G의 제4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바) 피고 H의 경우(제5토지 부분)

갑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5, 제5호증의 5, 을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V이 1995. 6. 13. 제5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U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95. 7.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H이 2017. 9.

29. AV으로부터 제5토지를 매수하여 2017.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V은 제5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7. 1.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AV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제5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며, AV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5토지를 매수한 이상 이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V은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95. 7. 1.부터 10년이 지난 2005. 7. 1. 제5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Q로부터 제5토지를 매수한 피고 H도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H의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사) 피고 I의 경우(제6토지 부분)

갑 제5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I는 2005. 9. 6. 제6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BB, BC, BD, BE으로부터 이를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2005.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는 제6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9. 13.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 I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제6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며, 피고 I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6토지를 매수한 이상 이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I는 제6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2005. 9. 13.부터 10년이 지난 2015. 9. 13. 제6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의 제6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아) 피고 J의 경우(제7토지 부분)

갑 제3호증의 7 내지 9, 제4호증의 7 내지 9, 제5호증의 7, 제9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Y이 1960. 10. 24.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처리된 AC 대 25평을 매수하여 1963. 6.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Y이 BF 대 11평 및 BG 대 11평의 각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던 AZ 및 BA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2. 12. 29.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1990. 6. 23. AC 대 25평, AD 대 11평, AE 대 11평이 합병되어 제7토지가 된 사실, 피고 J가 2017. 8. 2. 제7토지를 AY으로부터 증여받아 2017. 8.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Y은 AC 대 25평, BF 대 11평, BG 대 11평을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3. 6. 27. 또는 1962. 12. 29.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AY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된다. 한편 AC 대 25평의 경우, AY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등기부상 위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망인(P)이었으나, AY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으로서 위 토지를 매수한 이상, AY은 과실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BF 대 11평 및 BG 대 11평의 경우, AY은 위 각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 없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Y은 늦어도 AC 대 2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63. 6. 27.부터 10년이 지난 1973. 6. 27. 제

7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Y로부터 제7토지를 증여받은 피고 J도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J의 제7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대한민국의 귀속재산처리 및 매각행위의 위법성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인 망인이 1945. 7. 24. O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생성된 이 사건 각 토지도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귀속재산으로 편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는 위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 또는 과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

국 소속의 귀속재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본적으로 하는 제적등본을 확인하였다면 망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창씨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1946. 10. 23. 제정·시행된 조선성명복구령(군정법률 제122호) 제2조에 의하여 비로소 일본식 씨명이 조선성명으로 개정되었다.

② 따라서 광복 직후인 1945. 9. 1.경 분할 전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P'이라는 일본식 씨명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분할 전 토지를 일본인이 소유하던 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귀속재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공무원로서는 분할 전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법령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③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 P, 주소 : 부산부 BH'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망인의 부(父) BI의 제적등본에는 BI이 1934년 동래군 BJ로 전적하였고 1985년경 사망하기까지 전적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래군 BK리는 이후 BL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④ BI의 제적등본 호주란에는 조선성명인 'BI'과 함께 일본식 씨명인 'BM'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장남으로 망인의 이름 'K'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편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 대한민국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의 손해는 등기부취

특시효 완성 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특시효 완성 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되는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

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2030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당시가 아니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대한민국은, 위 대법원 2007다36445 판

결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즉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도 그 발생 기반이 없어져 물권적 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유권 상실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2046688 판결도 위 대법원 2007다36445 판결과 달리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일반적인 경우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보았는데, 위 판결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4831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및 위 대법원 2017다248315 판결의 내용만으로는 위 대법원 2007다36445 판결이 설 시한 앞서 본 법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귀속재산처리 및 매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결과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도 위 시점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B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9. 6.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3,18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각 토지	감정평가액 (단위: 원)
제1토지	340,637,000
제2토지	383,173,000 ³⁾
제3토지	395,438,000
제4토지	216,576,000
제5토지	233,253,000
제6토지	233,675,000
제7토지	300,436,000
합계	2,103,188,000

2) 책임제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이 사건 소 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피고 대한민국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20304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등기명의인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3) = 입주권가격 370,421,000원 + 청산금 12,752,000원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의 발생을 회피할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망인이 미리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권리를 상속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 확대의 책임 내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03,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위와 같이 인정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훈
-----	----	-----

	판사	김선아
--	----	-----

	판사	박종웅
--	----	-----

별지

목 록

1. 부산 금정구 N 대 172m^2
2. 부산 금정구 W 대 215m^2
3. 부산 금정구 Y 대 228m^2
4. 부산 금정구 Z 대 66m^2
5. 부산 금정구 AA 대 79m^2
6. 부산 금정구 AB 대 69m^2
7. 부산 금정구 AC 대 155m^2 . 끝.